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2022. 09. 01.

개정 2025. 02.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연구자”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수료생 포함) 중에 있는 참여 연구원을 말한다.
- ② “학생인건비”란 본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 ③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7조2항에 따라 학과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 ④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 ⑤ “연구책임자 단위”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단위 혹은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전문학사, 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본교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4조 (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인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본교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계정책임자의 의무) 계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인서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 운용 포함) 금지

제6조 (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계정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인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계정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에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7조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계정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정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참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참여확인서 체결) 산학협력단장 및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기(6개월) 단위로 연구참여확인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인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 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10조 (연구참여확인서 변경) 산학협력단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매월 15일까지 연구참여확인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변경 · 중단 · 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1조 (업무범위 제한)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2조 (학업·연구권 보장)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권리를 가지며, 계정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계상을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4. 석박사통합과정 : 1~4기 월 2,200,000원 / 5기 이상 월 3,000,000원

제15조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본교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생인건비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자체점검) 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과 계정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며, 본교는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②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교는 학생연구자의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본교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계정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계정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 정보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고충·상담 창구운영)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산학협력단 감사팀 및 유관부서는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계정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정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 감사팀 및 유관부서 등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계정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계정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 권한이 없는 경우 본교 내 해당 부서에 신속하게 요구한다.

제25조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자금대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자금대체 된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0조제2항의 연구개발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④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6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 이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으로 이관하

여 학생인건비를 지급 · 관리 할 수 있다.

부 칙(2022.09.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23.03.0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0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